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

2020.3.3.(화) 15:00 외교부(재외국민안전과)

※ 국가·지역별 가나다순

① 입국금지 조치: 37개 국가지역

※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

	구 분	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소지도 이에 포함 조 치 사 항
	TE	
	나우루	▶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3.)
	마셜제도	▶ 2019.12.31. 이후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탈리아, 일본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
	마이크로 네시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4.)
	말레이시아	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(보르네오섬위치) 및 사바주 입국금지(2.29.) ▶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·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·경유금지 ※ 말레이시아 국민,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(2.28.) ※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일본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(2.28.)
	몰디브	▶ 한국(대구, 경북, 경남, 부산)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.)
	몽골	▶ 2.273.11.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
아시아· 태평양	바누아투	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 ※ 2019.12.31.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비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 해야만 입국 허가(2.28.) ※ △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(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), △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, △왕복 항공권 필요
	베트남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·경북)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 (2.26.) /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전역(대구·경북 외)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조치(3.1.) /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(2.29) ※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, 건강검진, 격리조치(3.1.) ※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 발급 불허(1.31) ※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.), 이탈리아 및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단체 격리조치(2.28.)
	사모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, 이탈리아, 이란, 쿠웨이트, 대만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/ 14일이 지난 경우, 입 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(2.19.)
	사모아 (미국령)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/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(2.7.)
	솔로몬제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이탈리아, 홍콩, 태국, 이란, 대만,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

-	구 분	조 치 사 항
	싱가포르	▶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·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 ※ 싱가포르 국민, 영주권자,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(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)를 조건으로 입국허용(2.27.)
	일본	▶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·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
	쿡제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(2.27.)
	키리바시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(2.11.)
	투발루	▶ 입국 전 14일 내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4.)
	피지	▶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·청도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2.28.)
	필리핀	▶ 한국(대구경북), 중국,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
	홍콩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 ※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(2.25.)
미주	엘살바도르	▶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2.26.) ※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
	자메이카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 ※ 영주권 보유자,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, 조건부(검사 및 격리) 입국허용
	트리니다드 토바고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
	키르기스스탄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.)
유럽	터키	▶ 체류허가(이캬멧)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.) ※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,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
중동	레바논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 ※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는 입국 가능
	바레인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태국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1.) ※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(검사, 격리 등) 입국 허용
	사우디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 ※ 관광(Tourism)비자가 아닌, 여타 비자(취업(Work), 사업(Business), 상용(Commercial), 가족방문(Family Visit) 등) 및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
	요르단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3.) ※ 중국(2.2), 이탈리아(2.24)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
	이라크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 ※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※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(1.31), 이란(2.20), 쿠웨이트, 바레인(2.27)을 방문한

구 분		조 치 사 항
		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▶ 한국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중국,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(2.26)
		▶(쿠르드지방정부) 2020.1.1. 이후 한국, 중국, 이란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쿠웨이트,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 ※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/ 2020.1.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
	이스라엘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4.)
	쿠웨이트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,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(환승 포함)금지(2.25.) ※ 14일이 지난 경우, 입국비자(3개월 유효)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 허용
	팔레스타인	▶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마카오, 홍콩, 이라크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
	마다가스카르	▶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 금지(2.28.)
아프리카	모리셔스	▶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(북부 3개주)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(2.24.)
	세이셸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
	앙골라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나이지리아, 이집트,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9.)
	코모로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7.)

② 격리 조치: 22개 국가지역

가. 중국 지역

※ 아래 내용은 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동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 필요

구 분		조 치 사 항
중국 (지역별)	산둥성	 ▶ 청다오 류팅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,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(총 7열)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관찰,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(2.24) ▶ 웨이하이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,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 관찰(2.25) ▶ 옌타이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-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,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(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)(2.26)
	랴오닝성	 ▶ 다롄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(2.25) ▶ 선양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지정호텔 격리)(2.26)

지린성	 ▶ 창춘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, 확진자 탑승 확인시 해당 항공기 탑승자 전원 지정호텔 격리(2.26) ▶ 옌지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(2.26)
헤이룽장성	▶ 하얼빈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(2.26) ▶ 무단장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
광둥성	▶ 선전바오안공항/광저우바이윈공항 (및 광둥성내 항만), 한국에서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민 지정호텔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△음성판정자는 14일 간 지정호텔(비용 자부담) 격리, △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(3.2)
푸젠성	▶ 샤먼공항 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없을 시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(2.29)
상하이시	▶ 푸동/홍차오공항, 최근 14일 내 대구·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격리 (상하이 거주자 자가격리, 그 외 지정호텔 격리), 발열자는 병원 이송, 한국내 대구·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자가 건강관찰(1일 2차례 체온 측정 결과 보고 및 최대한 외출 자제), 발열자는 병원 이송 (2.27)
장쑤성	 ▶난징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,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(2.29) ▶옌청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,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(2.26)
저장성	▶ 항저우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,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(2.29)
톈진시	▶ 톈진공항 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, 발열자 발생 시 탑승객 전원 호텔격리 후, 발열자 1차 핵산검사 양성판정 경우 전원 검사 실시, 발열자 2차 양성판정 또는 미발열 승객중 1명 이상 양성판정 경우 전원 14일 간 지정호텔 격리, 발열자 음성판정시 전원 14일간 자가 격리로 전환(2.29)
충칭시	▶ 충칭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), 양성판정자(확진자)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(3.1)
산시성 (陝西省)	▶ 시안 셴양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관찰(한국인은 희망시, 핵산검사 후 음성판정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),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(총 7열) 탑승자 병원 대기 후 발열자 양성판정시 병원 격리, 발열자 음성판정시 지정호텔 격리(한국인은 희망시, 핵산검사 후 음성판정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)(3.1)
쓰 쵠 성	▶ 청두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로 전환, 양성판정자 발생시 전후 3열 (총 7열) 탑승자 14일간 별도 지정호텔 격리(2.28)

나. 기타 국가지역

	구 분	조 치 사 항
아시아	<u>·</u> 는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(북부)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14일간 자기격리, △보건당국에 자기격리 등록3.3. 23시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)
태평양	마카오	▶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(별도 지정장소) (2.26.)
		※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,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
미주	세인트루시아	▶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(2.26.)
	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2.28.)
	파나마	▶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(일부 지역)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 국민 대상 △건강상태 문진, △검역설문지 작성, △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(2.27.)
	러시아	▶ (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)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기격리 (3.1.)
		(사할린주) 한국, 일본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 사 실시, △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(21일), △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
	루마니아	▶ 한국(대구청도), 중국(후베이성), 이탈리아(북부)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 조치 /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청도 이외)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(3.2.)
	세르비아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발열검사 실시, △ 유증상(발열 등) 시 문진 실시, △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, △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(자가/격리시설), △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(2.27.)
	아이슬란드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, △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 (2.26.)
유럽	아제르바이잔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발열검사 실시, △유증상 시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(2.28.)
	우즈베키스탄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(별도지정 장소)(3.1.)
	카자흐스탄	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, 대만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, 이후 10일간 전화를 통한 검진 실시(3.1.) - 입국 시 발열 등 확인되면 바로 의료시설 격리 ▶ 공항 내 환승객인 경우 대기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면 공항 내 지정장소 대기후 출국, 대기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의료시설 대기 후 출국 조치(3.1.)
	크로아티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, 홍콩, 싱가포르를 방문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(발열검사 등 6~10시간 소요) 실시, △체류 지역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, △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자가 격리조치(2.26.) ※ 크로아티아 국민 및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(2.29.)
	타지키스탄	▶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(2.25.)
	투르크 메니스탄	▶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(2.28.)
중동	오만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싱가포르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자가 또는 지정시설)(2.22.) ※ △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고용주 보증 하에 입국 가능, △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

구 분		조 치 사 항
	카타르	▶ 한국, 중국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 (2.25.)
아프리카	가봉	▶ 한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 (2.29.)
	나이지리아	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유증상 (발열, 기침 등)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, △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(2.29.)
	라이베리아	▶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(지정 시설) 격리(3.2.)
	우간다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(2.27.)

③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: 30개 국가지역

Hョ	반에서 사증 취득 요망 14일간 자가검역(2.25.) 근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검역신고서에 걸친 검사 실시(2.27.) 중단(2.28.) ト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(단, 기 · 유효) 급 신청자의 코로나19 감염지역 방문
라오스 라오스 라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작성 의무화, △유증상(발열 등) 시 3회(의무화, ○유증상(발열 등) 시 3회(의무화, ○유증상(발열 등) 시 3회(의무화, ○유증상(발열 등) 시 3회(의무화, ○유증상(발열 등) 시 3회(의무화) 한국 인도대사관에서 발급 이부(이권 내용 확인) 및 방문 필요성(발표) 의무	은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검역신고서에 걸친 검사 실시(2.27.) 중단(2.28.) ト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(단, 기유효) 급 신청자의 코로나19 감염지역 방문비지니스 등)을 감안, 통상 절차에 따라나비자)는 중단
작성 의무화, △유증상(발열 등) 시 3회(► (비자) 한국, 일본 대상 도착비자 발급 등 ※ 인도대사관, 총영사관 또는 인도비자 발급된 모든 비자(e-비자 등 포함)는 - 신규 비자는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발급 여부(여권 내용 확인) 및 방문 필요성(비	에 걸친 검사 실시(2.27.) 중단(2.28.) ト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(단, 기 · 유효) 급 신청자의 코로나19 감염지역 방문 비지니스 등)을 감안, 통상 절차에 따라 ·비자)는 중단
아시아 태평양 인도 ※ 인도대사관, 총영사관 또는 인도비자 발급된 모든 비자(e-비자 등 포함)는 - 신규 비자는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발표 여부(여권 내용 확인) 및 방문 필요성(b	는데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(단, 기 · 유효) 급 신청자의 코로나19 감염지역 방문 비지니스 등)을 감안, 통상 절차에 따라 ·비자)는 중단
	5 이구하 이구이 대사 1/1이가 지기거리
▶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일본 등을 방문 후 권고 /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점 공항 내 재검사 실시, △감염 의심자의 △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3	검사 실시, △유증상(발열, 콧물 등) 시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,
폴리네시아 (프랑스령) ► 2020.1.1. 이후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즉 작성 및 제출, △항공기 탑승 전 미감인 제출(5일내)(2.27.)	
●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홍콩, 이란, 에콰도르, 스페인, 독일을 방문 후 입국 진이 문진 실시, △유증상(발열, 기침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(2.28.)	'한 내외국민 대상 △공항 상주 의료
비네수엘라 ▶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 등을 방문 실시, △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, △전:	
미주	틴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, △확진 시
▶ 한국, 중국, 대만, 일본, 미국 등을 방문 온두라스 실시, △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, △유 △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	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,

	구 분	조 치 사 항
	콜롬비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말레이시아, 이탈리아, 태국, 아랍에미리트, 싱가포르, 미국, 에콰도르, 스페인,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(2.24.)
	파라과이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태국, 싱가포르, 홍콩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(2.29.) - 인터뷰를 통해 대구ㆍ경북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
	라트비아	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, 일본, 싱가포르, 이란, 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(발열, 기침 등) 시 113에 신고, △의무샘플 검사 실시, 자가격리, 모니터링 실시 후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(2.28.)
	북마케도니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(북부)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(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)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(2.27.)
	불가리아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4.)
	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	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, △발열검사, △14일 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※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(2.24.)
	벨라루스	▶ 한국, 이탈리아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(2.25.)
유럽	사이프러스	▶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(북부)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(2.28.)
	알바니아	▶ 한국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(2.28.)
	영국	▶ 2020.2.19. 이후 한국(대구·청도), 중국(후베이성), 이탈리아(북부), 이란을 방문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, 보건의료서비스 (NHS)에 통보의무 부과(2.25.) /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·청도 이외)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, 보건의료서비스(NHS)에 통보의무 부과(2.6.)
	조지아	▶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및 면담 실시(3.2.) ※ 입국 전 14일 이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
중동	모로코	▶ 한국, 중국,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, △발열검사 등 실시, △유증상(발열, 기침 등)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, 의무 샘플 검사 실시(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)(2.28.)
	튀니지	▶모든 외국인 대상 △발열검사, △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, △검진결과에 따라 21일 동안 자가격리, △37.7도 초과 시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, △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(2.25.) ※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등 서류를 공항 내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
	말라위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(지정시설), △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8.)
아프리카	모잠비크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(발열, 기침 등)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6.)
	민주콩고	▶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△발열검사 실시, △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, △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 검사 실시(3.2.)

구 분		조 치 사 항
	에티오피아	 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14일간 자가격리, △전화 모 니터링, △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(2.18.) 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, 검역신고서 등 서류 추가 작성 요구(2.28.)
	잠비아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(2.26.)
	짐바브웨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유증상 시 격리조치, △무증상 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, △필요 시 21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6.)
	케냐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7.)

끝.